[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건강과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Q1. 개정안에서의 가명처리는 안전하다?

1.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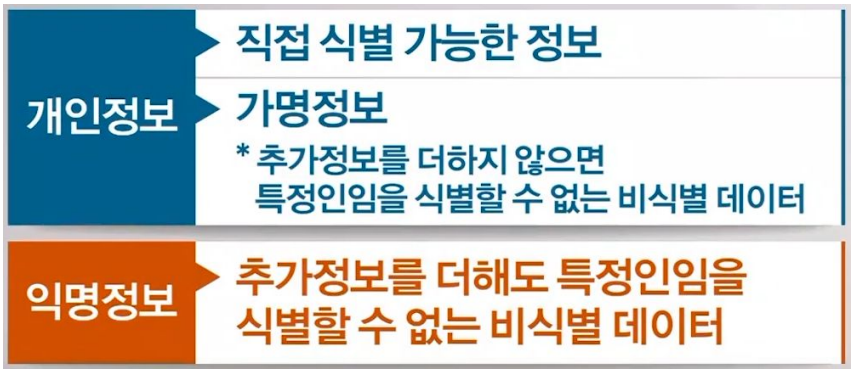

(출처 : SBS CNBC 용감한 토크쇼 직설 898회, 2019.11.28)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2조 1의2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함.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음. 유럽연합 GDPR도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

(출처 : 정무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심사자료)

2. 가명정보는 안전한가?

- 가명정보는 가명처리되지 않은 원래의 개인정보보다는 안전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의 형태로 처리,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명처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여전히 재식별될 위험성이 있음. 즉,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보다는 위험함. 따라서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재식별의 위험성은 가명처리의 방법 및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가명처리의 기술, 재식별 기술 모두 발전하고 있는 상황임.

- 개인식별자를 삭제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식별의 위험성이 있음은 이미 2016년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정하는 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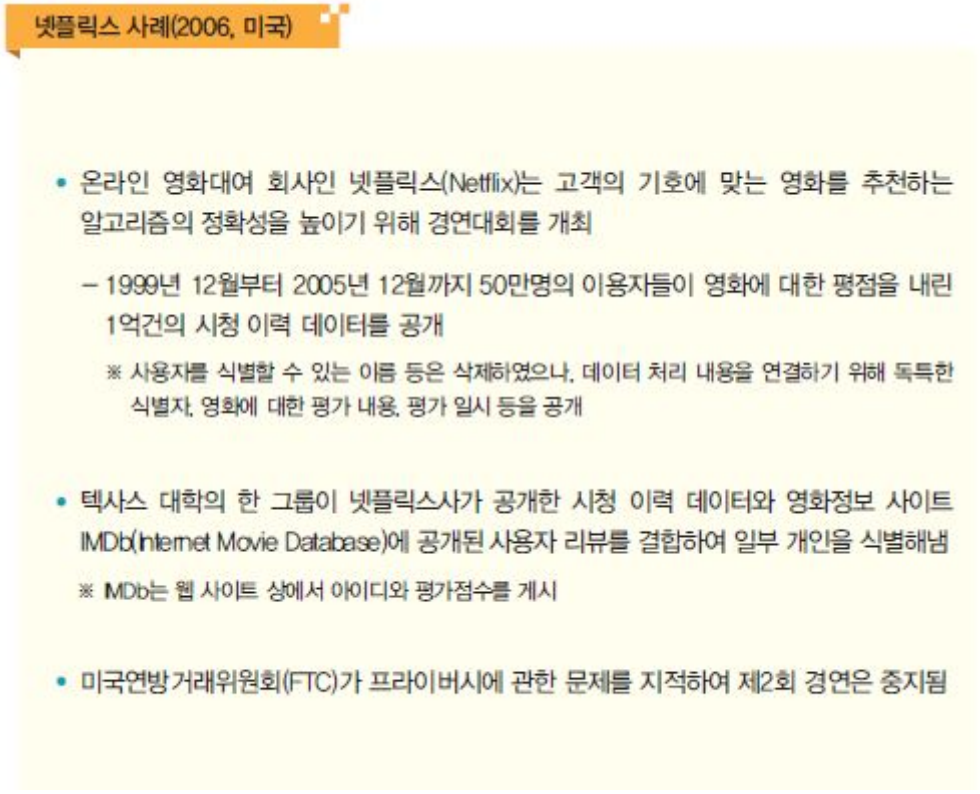

넷플릭스 사례(2006, 미국)

- 온라인 영화대여 회사인 넷플릭스(Netflix)는 고객의 기호에 맞는 영화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를 개최
  - 1999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0만명의 이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평점을 내린 1억건의 시청 이력 데이터를 공개
    ※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 등은 삭제하였으나, 데이터 처리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 독특한 식별자, 영화에 대한 평가 내용, 평가 일시 등을 공개
- 텍사스 대학의 한 그룹이 넷플릭스사가 공개한 시청 이력 데이터와 영화정보 사이트 IMDb(Internet Movie Database)에 공개된 사용자 리뷰를 결합하여 일부 개인을 식별해냄
  ※ IMDb는 웹 사이트 상에서 아이디와 평가점수를 게시
-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여 제2회 경연은 중지됨

(출처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

-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린 논문. (관련 기사)
  -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입상드르 드 몽조이(Yves-Alexandre de Montjoy)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미국, 터키 등의 공개된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일부 속성만 알아도 비식별화된 데이터에서 특정 개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 이 모델은 15개 인구통계적 속성(나이, 성별, 결혼 여부 등)만 알아도 그 어떤 익명화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99.98% 정확도로 개인을 구분해 낼 수 있었다.

3.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는?

- 개정안은 가명처리만 하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목적의 아카이브'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과학적 연구는 신상품 개발 등 기업 내부적인 상업적 연구도 포함하고 있음. 과학적 연구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로 동어반복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A 포털은 신상품 개발 연구 목적으로 B 통신사의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또한, A 포털은 자신의 고객정보를 C 신용정보업체의 고객정보와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A 포털, B 통신사, C 신용정보업체, D 유통사, E 병원 등은 자신의 고객정보를 서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음.
    - 유럽연합 GDPR은 'scientific research' 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다만, 'scientific research' 여부를 판단할 때,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자유로운 유통, 유럽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기반 강화라는 목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ICO는 과학적 연구는 상업적 연구(commercial research)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 가명정보는 안전하니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입장.
    - 개정안에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 사이에 가명처리된 고객정보를 공유, 결합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보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

- 가명정부 역시 개인정보이며 재식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학술 연구, 통계 등의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

- 해외에서는 학술 연구자에 한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후 결합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폐쇄적인 안전 공간에서 가명정보에 접근하여 연구를 수행한 후 연구결과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가명처리한 기업의 개인정보를 전문기관에서 결합하도록 지원하며, 결합된 가명정보를 원래의 기업에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Q2.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하는 문제_보건의료정보

1. 유전정보, 의료정보, 건강정보는 가명처리해도 재식별 가능

- 개인 유전정보,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는 원칙적 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

- 유전정보의 경우 가명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정보이며, 이미 과학계에서는 개인 의료/건강정보의 경우 99.9%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음. 따라서 개인과 그 가족 정보를 포함하는 유전정보, 의료/건강정보는 보다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호되어 함.

- 유럽 GDPR도 건강정보에 대해 원칙적 처리 금지를 명시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동의 규정, 고지 의무 등을 법제화함. 단 '명시적 동의' 혹은 '치료행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위한 경우, 학술 연구로 제한적 활용을 권고함.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나 알고리즘에 의해 어떠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해 환자가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자신의 건강정보 삭제를 요청할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됨.

2.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의료 공공성을 보호하는 안전핀 제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임. 의료민영화의 핵심 중 공보험의 역할 축소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향은 지난 20여년간 보험업법, 의료법 등의 개정 시도를 통해 추진돼 왔으나, 시민 다수의 반대를 통해 국회에서 법개정이 중단된 바 있음. 그 내용 중 핵심은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음. 박근혜정부 시기 '비식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허용하고자 했으나 법제화 단계로는 가지 못함. 이번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사 등의 오랜 민원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병원+IT기업 합작 의료데이터회사 설립 : 아산병원-카카오인베스트먼트-현대중공업, 네이버-분당서울대병원-대웅제약사

    - 마이헬스데이터 시범사업 : 세브란스-CJ프레시웨이-에쓰푸드 (건강 검진·처방전 등의 진료데이터를 이용한 식단 구매업), 서울대병원-웰트 –삼성화재(환자 개인 의료정보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 개인 맞춤 건강관리사업)

    - 보험사 등의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 개인 건강관련 수치, 질환 관련 정보, 건강검진 결과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하는 수준에 따라 수집 활용하도록 함.

    - 5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 :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신기술개발 활용되도록 지원,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한 국민 의료/건강 정보를 가명처리 후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허용, 이러한 개인정보의 본인동의가 없어도 과학적 연구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르도록 명시해 둠.

- 아산병원과 카카오, 분당서울대병원과 네이버등이 설립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데이터회사의 경우는 현행 불법임.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정보의 다른 목적 이용은 재동의가 필요하며, 제3자 제공도 불법임. 그러나 현대중공업, 아산병원, 카타오 등은 전자의무기록과 임상시험 정보 및 예약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인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함.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의료법에 저촉된다며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고 말한 바 있으나, 개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산병원은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과학적 방법의 연구' 라며 활용하려 할 것임. 이는 의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진료의무기록 상 정보의 남용 문제를 불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재벌이 병원 및 민간보험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의료현실에서 의료영리화를 더욱 추동하는 재앙이 될 것임.

- 진료 목적으로 제공한 환자의 내밀한 정보들이, 모든 병의원 약국은 건강보험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며,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당연지정제라는 공적 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에 수집된 국민들의 개인 의료/건강정보가 환자와 개인의 동의 없이 개방, 활용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임. 공공기관에 수집돼 있는 나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정보임. 목적 외 이용, 제 3자 제공에 대해 개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목적에 있어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동의 절차, 충분한 고지의 의무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일방적이며 비민주적인 추진은 결국 건강보험공단으로 상징되는 공보험에 대한 신뢰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환자들은 치료를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자신의 내밀한 건강 상태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진료의 왜곡, 신뢰 파괴의 결과를 나을 수 있음. 이는 건강증진은커녕 오진의 확률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가져올 수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생체인식정보의 경우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민감정보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현재 라이프로그 방식과 의료정보를 연계하는 마이헬스데이터 시범 사업은 홍채, 지문,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에 대한 보호는커녕, 개인정보 연계를 통해 '식별된 개인에게 맞춤형 상품을 판매하려는' 것임. GDPR 역시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에 상응하는 '특정범주의 개인정보'에 포함하여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빅데이터는 결국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됨. 개인 건강정보의 경우, 이것이 유출되거나 공개되었을 시 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결혼 등 각종 선택적 사회 제도에서의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취약자의 정보 유출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임. 알고리즘 설계 자체에서 배제된 데이터, 즉 개인은 존재하지 않거나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고착화될 위험도 있음.

- ‘데이터 중심 건강관리’ 라는 데이터경제론은 근거가 없음. 넛치(nudge)이론에 근거한 개인의 행동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됨. 거꾸로 건강증진 앱은 감시, 두려움, 죄책감을 동반해 경쟁적 자아 경영을 도모하며, 앱 사용에 있어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결국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건강의 개인책임화를 부추기는 경제논리임. 따라서 공적인 예산들이 다수 건강증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의료상업화로 투자되고 있는 공적자금의 왜곡도 데이터경제론의 큰 문제 중 하나임.

-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그 활용이 정보주체자, 집단, 지역사회에 주는 해보다 큰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공공의 이익),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이들에게 호혜적이며 사회적 연대를 갖는가의 여부(형평성), 데이터의 질과 안전, 사용에 있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책임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함.

Q3.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생하는 문제_금융정보

1. 신용정보법 개정안 산업에 미칠 가장 큰 변화는?

- 개정안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신용데이터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 기존 업권에 적용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금융산업의 영역을 데이터산업으로 확장토록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활용 수준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됨.

2. 세계 금융산업이 핀테크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 빅데이터 기반의 핀테크 혁신은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고 노동조합도 이런 변화의 필요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정안은 혁신성장을 명분으로 철저히 산업계의 요구만을 기존 신용정보 보호체계에 수용해 결과적으로 신용정보보호라는 법의 존재 이유까지 위협하고 있음.

3. 금융산업이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려면,

신용정보호제도 역시 일부 변경될 수밖에 없을텐데?

- 새로운 신용정보보호제도는 가명정보의 개념과 그 활용을 일정부분 수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보장하더라도 동시에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활용의 한계(학술연구, 결합제한 등)를 함께 법률로 수용하여 가명정보 남용의 위험을 막지 않는다면,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할 것임

4. 당장 예상되는 금융산업의 부작용은 무엇인지?

-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죄로 이미 불법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대환사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수법의 도구로 범죄자들에게 애용(?)되고 있음. 미신고 피해까지 합칠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이미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불행히도 국내 금융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가명정보 활용이 본격화 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그에 비례하여 급증할 것으로 보임.

5.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든다면?

- 근본적인 부작용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극단적 정보격차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금융공공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임. 이제 금융회사들은 철저하게 가명정보의 이종 간 결합을 바탕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 전략을 운영하게 됨. 이것은 공급자가 소비자 집단을 매우 정확한 수준에서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리스크가 '0'에 수렴하는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는 의미임. 결과적으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소외는 피할 수 없음. 빅데이터와 금융의 결합이 당장 새롭고 편리한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낳겠지만 머지않아 극단적인 양극화를 강화하는 촉매로 작동할 것임.

Q4. 개정안은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는 GDPR과 동일하다?

1.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하다?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수집,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요하는 등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필수적인 용역,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아무런 규제도 없고, 거꾸로 동의를 하였을 경우 사실상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이 제한없이 가능함.

- 최근 강화된 미국 캘리포니아소비자보호법(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An implementation guide, 이하 'CCPA')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언제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말도록 지시할 "옵트아웃" 권리가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삭제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페이스북에서 무단으로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캠브릿지 애널래티카라는 회사의 사례를 들면서, 명백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과 '투명성'을 규제 취지로 들고 있다.

-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은 과학적 연구나 통계적 처리를 위해 안전조치의 한 종류로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다. 오히려 GDPR은 가명정보를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 결국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여 GDPR 또는 미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겠다는 개정안의 주장은 지나친 규제 완화로 인해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음.

Q5. 개정안은 법체계상 문제점이 없다?

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보법 개정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현행 법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개별 법률에서의 정보 보호는 대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직접 규율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개보법 개정안 및 신정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다양한 영역의 정보보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됨
- 특히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정보 중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화,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2.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과 충돌하지 않을까?

- 개별 법률은 특정 정보에 대하여 활용 목적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보법 개정안이나 신정법 개정안은 그 개별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정보**는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정보인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 및 그 종사자 등이 알게 된 건강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는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게 비밀누설금지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 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 작성 · 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 · 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 · 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 · 보관 ·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교육목적으로 수집된 **학생의 정보**, 복지수급을 위해 제공된 **수급자의 정보** 등 또한 각 영역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데 개보법 개정안과 신정법 개정안에 따라 상업적,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은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또한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게 비밀누설과 목적 외 활용을 금지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개인정보의 보호) ⑥ 자활지원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자활지원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위 개별 법률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 지난 정부에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자 관련 기관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처리 한 정보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행안위 등이 밝힌 입장과는 달리 개보법 및 신정법 개정안은 개별 법률과 충돌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의료법, 교육기본법 등은 다른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보호의 예외로 두고 있음. 즉 개보법 및 신정법 개정안에 따라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건강정보 및 학생정보가 상업적, 영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임

3. 신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체계에 적합한 법률안인가?

- 신정법 개정안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에 어긋나는 다수의 독자적인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정법 개정안은 목적(안 제1조)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신정법이 개인정보보호법제로서 가지는 성격을 부인하는 것임
    -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조치'와 '가명정보'의 각 개념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제15호 내지 제16호)
    - 신정법 개정안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산업적 연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명정보의 상업적, 영리목적의 활용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안 제2조 제9의2)

- 신정법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특정 신용정보의 익명조치를 금융위원회가 추정할 수 도록 하는 등(제40조의2), 수집과 활용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신정법 개정안은 개보법 개정안 그 '이상'의 규제 및 보호완화를 규정한 법률안임. 즉 신정법 개정안은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본으로 하는 개인정보체계와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움